

판인생략

# 서울특별시

훈령

계정

합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156-8 / 전송 731-6562

분서번호 법무 11360-*dp*

시행일자 1993.5. *21*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준영구	<i>[Handwritten Signature]</i>	
기획관리실장	전결		
법무 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법재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	주정상 <i>[Handwritten Signature]</i>		협조

제목 훈령안발령

1.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훈령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공보관

참조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랍.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2부. 끝.

# 서울특별시장

(제 3 안)

수신 민방위과장

참조 훈령발령 통보

1. 민방위 13700-336(93.5.17)호와 관련임.

2.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 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생략). 끝.

# 서울특별시장

판인생략

서울특별시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 93 년 5 월 일

서울특별시 장

인

##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풍수해대책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와 사고로인한재해수습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275호, 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방재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습체제를 구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인위적 재해(사고)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총칭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
3. "수습 주무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상 기능과 관련되는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라 함은 재해발생시 사태수습에 공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해를 제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와 자연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예방체제

제 4 조 (도시방재종합계획의 작성) ①민방위국은 재해에 대하여 연간 도시 방재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한다.

② 도시방재종합계획에는 재해유형별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수습 주무부서는 유형별로 다음해의 재해예방 및 수습대책등에 관한 연간 도시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민방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부서는 재해발생시 지원하여야 할 사항등을 포함하는 지원세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민방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장은 다음해의 연간 도시방재종합계획을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조 (특수취약지 지정관리)

① 수습 주무부서는 지역·시설별로 안전관리카드를 작성 진산화하여 관리한다.

② 수습 주무부서는 특수취약지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 예찰을 실시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습 주무부서는 분기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민방위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방위국은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종합추진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합동안전점검반 편성운영) ① 수습 주무부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취약지구 및 시설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위험요소 발견시 시정조치 및 보완후 공사를 개시하거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습 주무부서는 노후 위험시설에 관하여 수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습 주무부서는 합동안전점검계획과 그 조치결과를 즉시 민방위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대책회의) 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을 토대로 반기 1회이상 관련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가진다.

②대책회의의 회의자료는 수습 주무부서 또는 민방위국이 작성한다.

제 8 조 (지역책임제) ①구청장은 그 관할구역내 재해위험요소를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3 장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운영

제 9 조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①시행령 제20조 및 훈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활한 재해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본부에는 본부장, 부분부장, 통제관, 보좌관 및 실무반의 반장을 둔다.

③업무기능별 실무반은 상황반, 분석반, 인명구조반, 구호반, 복구반, 교통통제반, 지원반 및 홍보반을 두고 사고의 유형에 따라 기타 필요반을 둔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구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 10 조 (본부장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분부장은 서울특별시부시장이 된다.

②통제관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본부장 및 부분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의 명을 받아 실무반을 지휘·감독한다.

③보좌관은 재해유형별 수습 주무국장 및 민방위국장이 되며 본부장, 부분부장 및 통제관을 보좌한다.

④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부장, 통제관, 보좌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재해수습 주무부서 지정) ①각종 재해 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 하천·제방 및 침수등 재해 : 하수국
2. 설해 및 도로·교량붕괴 등 재해 : 도로국
3. 산불, 기타 산림·공원내 사고 및 환경오염등 : 환경녹지국
4. 가스, 전기 및 화공약품 등 사고와 농업 재해 : 산업경제국
5. 지진 및 방사능 재해 : 민방위국
6. 창고 및 차량·지하철·열차·항공기 등 교통관련 사고 : 교통국
7. 선박 및 수상오염등 사고 : 하수국(한강관리사업소)
8. 교통사고 및 총포화약류등 사고 : 서울지방경찰청
9. 건축물등 사고 : 주택국
10. 대형공사장(도로, 지하철등)사고 :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11. 위험물 및 건축물 화재등 사고 : 소방본부
12. 상수도 급수등 사고 : 상수도사업본부
13. 각종 질병 및 전염병등 사고 : 보건사회국

②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의 주무부서는 서울특별시 직제등 관련 규정에서 당해 기능을 관장하는 부서가 되며, 여러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한다.

③직제의 변경으로 수습 주무부서가 폐지된 경우와 주된 기능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제 12 조 (전결사항) ①본부장은 본부 운영상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을 별표1과 같이 위임전결하도록 한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실무반 편성운영

제 13 조 (공통사항) ①각 실무반의 관장사무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반장을 관련업무를 담당한 다른반의 반장과 자료제공등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조요구시는 적극 이에 용하여야 한다.

③각 실무반은 3급이상 공무원인 반장 1인과, 4급이하 공무원 10인내외로 편성한다. 다만, 자연재해 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인원은 별표2와 같다.

제 14 조 (상황반) ①상황반장은 재해 유형별 수습 주무국장이 되며 그 반원은 수습 주무부서 및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상황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발생시 상황실 운영 관리 총괄
2. 보고·연락체계 유지(상급 및 유관기관)
3. 종합상황 파악 기록유지 및 상황판 정리
4. 피해 통계작성 및 소요예산 종합
5. 기능별 재해예방·수습 세부계획수립 시행
6. 관계기관간 자료·정보수집 및 협조
7. 재해발생 원인규명 및 대책 강구(합동조사반 편성)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제 15 조 (분석반) ①분석반장은 민방위국장이 되며 그 반원은 민방위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분석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해예방 및 수습대책계획 종합·조정
2. 평시 도시방재종합대책상황실 유지·관리
3.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 구성·운영
4.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 군지원 협조 사항
6. 민방위대 동원 사항

제 16 조 (인명구조반) ①인명구조반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그 반원은 소방본부, 보건사회국, 민방위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인명구조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명구조 총괄 및 구조 실시
2. 119 구급대·구조대, 민간구조요원, 군헬기 지원등 협조 활용
3. 화재예방 및 진압

제 17 조 (구호반) ①구호반장은 보건사회국장이 되며 그 반원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구호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사상자 처리 및 병원 관리
2. 이재민수용 및 구호
3. 구호금품 수집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유족관리 및 보상대책 수립·시행
5. 기타 방역·예방접종등

제 18 조 (복구반) ①복구반장은 도로국장이 되며 그 반원은 도로국, 산업경제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복구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 실시
2. 복구용 중기 및 장비 동원
3. 분야별 복구계획 및 소요예산 편성자료 작성
4. 복구사업 지도·감독
5. 복구용 자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 19 조 (교통통제반) ①교통통제반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그 반원은 교통국,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교통통제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통대책 강구 및 우회소통
2. 재해 현장의 경비 및 질서유지

제 20 조 (지원반) ①지원반장은 내무국장이 되며 그 반원은 내무국, 감사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지원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현장지휘소와 본부간 통신망구성 및 차량등 장비지원
2. 공무원 비상소집 및 근무상태 점검
3. 본부요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민심동향 및 각종 민원사항 접수 처리
5. 피해지역 주민 긴급대피 및 소개
6. 구 및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제 21 조 (홍보반) ①홍보반장은 공보관이 되며 그 반원은 공보관, 재해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홍보반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도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
2. 언론 협조 및 통제
3. 피해지역 현장촬영등 기록 유지
4. 주민 행동요령등 홍보

제 22 조 (기타반) ①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반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그 반원은 소관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제 5 장 사고 수습체제

제 23 조 (사고의 구분) 사고 수습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형사고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시·구에서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

2. 중형사고 : 대형사고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시·구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고
3. 소형사고 : 피해정도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구단위에서 대처가 가능한 사고

제 24 조 (대형 및 중형사고 수습체제) ①대형 및 중형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습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 신고 접수 및 전파(비상연락)
2. 신고 접수후 즉시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 단체등 통보
3. 즉각 본부 가동
4. 긴급 출동 및 응급조치(현장 지휘소 운영)
  - 가. 119구조대등 긴급 재난구조대 및 경찰 급파(인명구조, 주민대피, 응급복구, 현장통제 실시)
  - 나. 전기, 가스, 수도관련 요원 급파
  - 다. 비상연락망을 통한 공무원, 예비군, 군인, 복구장비등 동원연락
  - 라. 민방위대 동원여부 판단 및 조치
  - 마. 현장지휘소는 관할지역구청장이 즉각 설치운영하되, 대형공사장 사고의 경우는 공사관련본부장이 총괄 지휘한다.
5. 사상자의 신속한 수송, 가료대책 추진
  - 가. 동원기관·단체와 현장간, 현장에서 병원간의 원활한 교통로 확보 (경찰안내등)
  - 나. 시 본부와 현장지휘소간, 현장지휘소와 병원간의 긴급연락체계 확립(사상자에 대한 병원별 적절한 분산수용 가료)
6. 이재민 수용 및 안전대책
  - 가. 이재민 수용시설은 평시에 계획된 지정시설을 활용
  - 나. 수용시설별로 우선 상·하수도, 전기, 취사 및 통신시설 설치
  - 다. 의료기동반 배치 및 방역소독등 실시
  - 라. 응급구호 비축 비상물품 긴급 활용
  - 마. 수용장소에 관리요원 배치로 피해자 대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7. 현장 응급복구 원상회복

- 가. 적절한 인력 및 장비 투입으로 조기회복 조치
- 나. 화재 및 폭발등 2차 피해유발요인 사전 제거
- 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 통신, 수도시설등 최우선 복구

8. 피해현황, 원인조사 및 항구복구 추진

- 가. 본부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편성 피해현황 조사
- 나. 조사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복구계획 수립 복구조치

②사태발생시 공무원 비상소집은 별표2 의 자연재해대비체제 근무요령중 비상체제(제3단계)에 준한다.

③사고수습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 조 (소형사고 수습체제) 소형사고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응급조치와 사고수습을 하고 시장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 제 6 장 자연재해 수습체제

제 26 조 (대비체제 구분등) 재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비체제를 갖추되 이를 준비체제(제1단계), 경계체제(제2단계) 및 비상체제(제3단계)로 구분한다. (별표2참조)

제 27 조 (준비체제) ①준비체제(제1단계)라 함은 폭풍, 폭풍우, 호우, 폭풍설 대설 및 태풍등에 관한 주의보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준비체제하의 대비태세는 다음과 같다.

1. 강우량 및 강설량등 기상관계자료 수집분석
2. 구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및 사업소에 재해예방조치 지시
3. 피해발생 상황 및 응급조치 상황파악 집계보고
4. 경계체제로의 전환준비

제 28 조 (경계체제) ①경계체제(제2단계)라 함은 홍수주의보, 폭풍, 폭풍우 호우, 폭풍설, 대설 및 태풍등에 관한 정보가 발령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경계체제하의 대비 태세는 다음과 같다.

1.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관계기관과의 통신시설 점검 또는 신규설치
3. 본부 운영에 필요한 직원근무소집
4. 실무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 근무 실시
5. 비상체제로의 전환준비

제 29 조 (비상체제) ①비상체제(제3단계)라 함은 홍수경보발령 및 한강수계 대부분의 지역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막심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②비상체제하의 대비 태세는 다음과 같다.

1. 제2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본부 가동
3. 제31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 소집검토
4. 재해격심지역 특별통신망 구성
5.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실시
6. 재해발생상황 또는 응급조치 상황등 재해관계 자료작성 및 대외 홍보

## 제 7 장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 운영

제 30 조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 각종 재해의 예방, 수습 및 복구등 재난에 대한 원활한 업무수행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 31 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는 서울특별시민방위협의회 위원에 재난관련 지역 유관기관장을 추가 위촉하여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된다.

②협의회는 년 2회(상·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실무위원회(위원장 : 민방위국장)를 설치한다.

④수습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는 기능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계획에 의한다.

제 32 조 (협의회의 임무, 협조지원등) ①협의회는 재해의 예방, 수습 및 기타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연간 종합방재계획 심의
2.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반 편성운영 협의
3.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간 지휘협조체제 구축
4. 재난대비 대시민 교육훈련의 내실화방안 협의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각급 지방행정기관장 및 유관기관장은 시·구협의회 의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구협의회 의장은 지역 군부대장에게 응급조치 및 재해수습에 필요한 인력, 장비등의 지원요청을 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는다.

④사고발생시 관련기관은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히 동, 구 및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장 상황유지 체제 운영

제 33 조 (상황실 운영) ①각종 재해발생시 그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평시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주간(근무시간) : 방재담당부서 직원으로 상황실근무 및 상황 유지

2. 야간 및 공휴일 : 당직사령 책임하에 상황유지 (수시 상황실 순찰 이상유무 확인)

③재해발생 예견시 및 재해 기간중에는 관련 주무국 계획에 의거 상황실을 운영한다. (풍수해 및 설해대책 기간 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 유지가 어렵거나, 인원의 보강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간 및 야간근무자를 각각 2명씩 윤번제로 명령한다. 다만, 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명령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 직원은 서울특별시당직근무규칙 제3조에 의한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제 34 조 (재해발생시 근무시간 등) 제23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시, 본부 실무반근무자의 교대근무시간은 당일09:00부터 익일09: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5 조 (상황근무자의 임무) 상황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해관련 자료수집 파악 (기상, 기타)
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피해발생상황 파악
3. 재해대책 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처리
4. 긴급한 사안, 중요한 정보접수시 보고이행 및 지시처리
5. 상황근무일지 기록 정리
6. 교대시 근무중 제반사항 인계인수 철저

제 36 조 (근무자등 급식) ①상황근무자중 주간근무자는 1식을 지급하고 야간근무자는 2식을 지급한다. 다만, 24시간 교대 근무시는 3식을 지급한다.

②급식 1식의 단가는 당해년도 예산서상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

제 37 조 (피해상황 보고) ①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재해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상황 및 중요 특기사항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는 다음 요령에 의하되, 풍수해대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sup>에</sup>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생보고 : 피해발생 즉시 6하원칙에 의거 개요파악 보고
2. 일일보고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간대별 수시보고
  - 가. 인적·물적피해 내용
  - 나. 응급조치상황
  - 다. 군 지원상황
  - 라. 교통 상태
  - 마. 중요 조치사항 및 2차적 피해상황등
3. 최종보고 :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
  - 가. 피해사항 총괄
  - 나. 인명·물자 피해사항
  - 다. 응급복구 조치사항 총괄
  - 라. 응급구호 조치사항 총괄
  - 마. 재난 구조사항
  - 바. 인원 및 장비 동원사항 총괄등
4. 확정보고 : 최종보고 후 5일 이내
  - 가.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의 사항
  - 나. 주요 피해현황 사진첩(사진규격 : 칼라 5"×7")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보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한다.
2. 발생보고 및 일일보고 : 전화 또는 모사전송보고
3. 최종보고 : 모사전송 또는 서면보고
4. 확정보고 : 서면보고

## 제 9 장 재난대비 훈련

제 38 조 (훈련 참여)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각종 재난훈련시 해당 수습 주무부서 및 관련기관은 이에 적극 참여한다.

제 39 조 (합동 모의훈련실시) 본부 주관으로 유관기관 재난대비 합동 모의 훈련을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1. 효율적인 재난 수습활동 수행을 위하여 모든 재난 포함
2. 사태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한 지휘체계 훈련
3. 도상 및 현장 지휘훈련 병행 실시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1991년 6월 25일, 훈령 제716호)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93년도 풍수해대책에 관하여는 '93.12.31까지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1991년 6월 25일, 훈령 제716호)을 적용한다.



(별표 1)

# 위 임 전 결 사 항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비 고
		반 장	통 제관	부 부 장	본 부 장	
1	도시방재종합 대책본부 운영 및 조직	· 4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 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 · 근무개시 및 해제결정 · 실무반 편성 및 운영 · 실무반원의 복무 지도감독 · 상황실근무자 근무명령 및 근무상태 지도 점검 · 당직일지 기록 비치 · 물품 관리 운용	○	○	○	
2	자치구 및 사업소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지휘 감독		○			
3	현장지휘소 가동 및 운영		○			
4	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등	○				
5	기상특보발령 에 대한 조치	· 홍수등 경보 발령 시 · 홍수주의보 발령 시 · 기상주의보 발령 시	○			
6	재난구조사항	· 헬기등 주요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 재난구조 상황 파악	○			
7	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			
8	군 지원사항	· 군장비등 지원 요청 및 협의 · 군장비 지원 사항 파악	○	○		
9	통신망 운영 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 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진 결 권 자				비 고
			반 장	통 제 관	부 부 장	본 부 장	
10	구호활동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호 활동 지원 요청 및 협의</li> <li>· 구호 활동 상황 파악</li> </ul>	○	○			
11	피해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자료 수집</li> <li>· 피해 상황 자료 수집</li> <li>· 일일 재해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배부</li> <li>· 합동 조사반 현지파견 결정</li> <li>· 피해액 확정</li> <li>· 복구 계획 수립</li> <li>· 복구 사업 지도·감독</li> </ul>	○	○	○	○	○
12	도시방재종합 대책본부 행정비 예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비 내시 및 배정 요구</li> <li>·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근무자 급량비 지출 요구</li> </ul>	○				
13	지시, 기존방침 및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				
14	조회 협의회신, 조사, 자료의수집 및 보고서의 처리에 관한사항		○				

(별표 2)

### 자연재해대비 체제별 근무요령

구 분	조 건	관 상 ( A.B 조 )	활 동 방 법
준비체제 (제 1 단계)	1. 호우 또는 태풍주의보 발령시 . 시간당 강우량이 20mm 이상 . 일강우량 80mm 이상 . 한강 인도교 수위 4.5m 도달 . 폭풍, 집중호우로 재해발생 예상시  2. 대설주의보 발령시 . 기온 -5℃ 이하로 적설 5cm내외	.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요원 1/4  으로 15명 이상 편성	. 재해발생예견시 및 재해기간(6.15 - 10.15, 11.10 - 3.10) 중은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실근무로 상황유지  . 기상예보 접수 및 시달  . 수방대비 지시  . 제2단계 조치사항 준비
경계체제 (제 2 단계)	1. 호우 또는 태풍경보 발령시 . 일강우량 150mm 이상  2. 홍수주의보 발령시 . 한강인도교 수위 8.5m 도달  3. 대설경보 발령시 . 기온 -5℃이하로 적설 10cm 이상	.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요원 1/2  으로 30명 이상 편성	. 재해상황 정리  . 상황처리  . 24시간 고대근무  . 제3단계 준비
비상체제 (제 3 단계)	1.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인도교 수위 10.5m  2. 지역적으로 막심한 피해발생 예상시	.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 요원  24시간 비상근무	. 상황발생시 지원활동  . 장비, 인력동원  . 복구계획 작성